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01.01.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9년 한도금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20년 한도금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인상 율	2.88%	2.87%	2.87%	2.70%	2.69%	2.68%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0.01.01. 기준)

방문 당 시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금
30분	14,530	2,180
60분	22,310	3,347
90분	29,920	4,488
120분	37,780	5,667
150분	42,930	6,440
180분	47,460	7,119
210분	51,630	7,745
240분	55,490	8,324

구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74,470	11,171
차량이용(가정 내)	67,150	10,073
차량 미 이용	41,930	6,290

4.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은 해지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 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여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